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3. 25.(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2. 28. 정해숙 의원 외 12인 발의 (의안번호 435호)
- 나. 회부일자 : 2025. 3. 13.
- 다. 상정일자 : 제3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5. 3. 19.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정해숙 의원)

가. 제안이유

-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되던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신 청년들이 공개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법적 제도 안에서 안정적으로 구정 업무를 직접 체험하며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도움과 사회진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험을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및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근무방법 및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다.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라. 활동확인서 교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3. 6. ~ 2025. 3. 12.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제정 취지

- 본 제정안은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되던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대상 범위를 대학생에서 미취업 청년으로 확대함으로써 관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나. 조문 검토

- 안 제1조(목적)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대상)에서는 사업 대상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1)에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함.

기준에 행정인턴 모집 시 모집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함으로써 비(非)대학생이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또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대학 이상의 학력의 필요 여부가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

-
-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인턴 모집 시 비(非)대학생 차별> 사건에 대해 청년행정인턴 사업에서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함.(2023. 4. 18.) 권익위원회는 권고 과정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시정에 관한 관심과 참여’, ‘가계 안정 및 재정자립도모’라는 행정인턴의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학생이 아닌 청년을 배제할 이유가 없는 점, 행정인턴 수요기관의 사업 내용 및 자격요건 상 반드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거나 대학에 재학중이어야만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 인턴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한정한 피진정인들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학력에 의한 차별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함.

- 이에 성북구는 2025년부터 사업명칭을 ‘청년 구정체험 아르바이트 사업’으로 변경하고 대상 연령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4)에 따른 19세에서 29세 성북구 거주 청년으로 변경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사업 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하여 규정한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

사업 변경내용					
구분	기존			변경	
사업명	대학생 아르바이트			청년 구정체험 아르바이트	
모집인원	상·하반기 총 200명			상·하반기 총 220명	
모집대상	일반 (85)	성북구 거주 대학생(19세~39세)		일반 (95)	성북구 거주 청년(19세~29세)
	우선 (15)	성북구 거주 대학생 중 사회적 배려 필요 대상자(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우선 (15)	성북구 거주 청년(19세~29세) 중 사회적 배려 필요 대상자(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안 제3조(운영시기)와 제4조(근무방법 등)는 사업 운영 시기를 매년 2회 이상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근무 방법에 대해서는 구 분청, 소속기관, 동 주민센터, 그리고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참여자의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규정함.

3)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시 학력에 의한 차별> 의안에 대해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대상을 대학생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권고 결정을 원안 가결한 바 있음.(2023. 11. 17.)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안 제5조(수요조사)는 행정체험단 모집공고 1개월 전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행정체험단의 재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
- 안 제6조(신청)와 제7조(대상자 선발)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신청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대상자 선발은 공개 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인원의 15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8조(임금기준)부터 제10조(활동확인서 교부)까지는 임금 기준과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 확인서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 결과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그동안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되던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근거를 명문화하여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업 범위를 대학생에서 미취업 청년까지 확대함으로써 비(非)대학생이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기관 직무 경험을 통해 관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입법 취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조례명과 집행부 사업명이 상이하므로, 조례 제정 후 사업명을 조례와 동일하게 사용하여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정해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5
----------	-----

발의연월일 : 2025년 2월 28일

발 의 자 :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김육영,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호건,
임태근, 정기혁, 정병기,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되던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신 청년들이 공개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법적 제도 안에서 안정적으로 구정 업무를 직접 체험하며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도움과 사회진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험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근무방법 및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활동확인서 교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2025. 3. 6. ~ 2025. 3.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이하 “행정체험단”이라 한다) 운영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운영에 따라 선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운영시기)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 2회 이상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근무방법 등)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을 구 본청 및 소속기관, 동주민센터, 성북구의회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근무하거나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및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성북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에 행정체험단을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실현을 위하여 사무 및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에 참여한 청년이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여자의 선택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

제5조(수요조사)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모집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관 등에 알리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수요 부서, 업무 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행정체험단의 재능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제6조(신청) ① 행정체험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다음 증빙자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년의 경우 미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확인서’

2. 대학생의 경우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② 신청자는 신청서에 신청사유, 희망 업무 분야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발) ① 행정체험단 대상자 선발은 기관 등의 수요 및 신청자의 지원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15 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3. 차상위 계층 본인 또는 자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본인
5.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임금기준) 행정체험단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을 지급하되 구청장이 미리 정하는 임금 단가를 적용한다.

제9조(프로그램 운영)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운영 기간 중 필요한 경우 간담회와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현장실습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활동확인서 교부)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에 참여한 청년에게 활동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활동확인서에는 청년의 업무 내용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3. 25.(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2. 28. 경수현 의원 외 11인 (의안번호 436호)

나. 회부일자 : 2025. 3. 13.

다. 상정일자 : 제3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5. 3. 19. 상정 · 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경수현 의원)

가. 제안이유

-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조례 협의(안)에 따라 현행의 조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밀집 기준을 용도 지역별로 구분하고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함.

나.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안 제2조)

나. 지원사업에 대한 항목 추가(안 제5조)가.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3. 6. ~ 2025. 3. 12.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정 취지

- 본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밀집 기준을 용도 지역별로 구분하여 완화하고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나. 조문 검토

(1)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안 제2조)

- 안 제2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점포 밀집 기준을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으로 구분하고, '상업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30개 이상 밀집	▶ 상업지역: 30개 이상 ▶ 상업 외 지역: 25개 이상 ▶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 주용도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으로 적용. 다만,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전통시장법」 제2조제2호의2⁵⁾에서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⁶⁾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이나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조례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현황〉

연번	구역명	상인회		규 모 (785개)		지정일	용도구역
		대표자	상인수	면적(m ²)	점포수		
1	정릉서경대길	이상문	70명	4,952.7	75개	'21. 8. 3.	제2종일반주거
2	꿈의숲 장곡	백 현	55명	2,615.8	66개	'21. 8. 3.	제2종일반주거
3	성북천	박기현	30명	6,146.5	94개	'22. 8. 10.	준주거
4	배발골	최영출	32명	3,732.8	64개	'22. 8. 10.	제1종일반주거
5	종암북바위길	정창양	63명	9,667.0	157개	'22. 8. 10.	준주거 & 제2종일반주거
6	석계음식문화거리	원복희	104명	10,543.5	161개	'23. 8. 10.	제2종일반주거
7	월곡달빛오거리	강태이	86명	10,408.2	168개	'23. 8. 10.	제2종일반주거

- 5)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 6)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따라서 2023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조례 협의(안)에 따라, 상업 외 지역의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협의안에 대한 조례 반영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사료 됨.

□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조례 협의(안)

구 분		밀집기준 변경(안)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內 읍면동)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으로 밀집
	상업지역 외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으로 밀집
중소도시 (특별도·시, 도 內 읍면동)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으로 밀집
	상업지역 외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밀집
농어촌(군 內 읍면동)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밀집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173호(2024.1.22.)>

(2)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사업 추가(안 제5조)

- 안 제5조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경영 및 시설현대화 사업과 상인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이는 「전통시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

(3) 별표 제1호서식 개정(안 제5조)

- 그 밖에 별지 제1호서식은 조례의 제명 중 오타 부분을 정비한 것임.

다. 종합 검토 결과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를 통해 골목형상

점가 지정을 촉진하고, 지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골목상점가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 이유

- 제2조제1호다목의 단순 오기를 바로잡고,
- 2022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 자치법규(안)」에 따른 권고를 반영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요구되었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문은 이미 개정되었으나,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 명칭에는 해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수정 내용

- 제2조제1호다목 본문 중 “해동”을 “해당”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제1호 중 “각 호”를 “제1호”로, “자(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를 “자가”로 한다.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36
----------	--------

제안연월일 : 2025년 3월 19일

제안자 :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제2조제1호다목의 단순 오기를 바로잡고,
- 2022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
자치법규(안)」에 따른 권고를 반영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요구되었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문은 이미
개정되었으나,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 명칭에는 해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제1호다목 본문 중 “해동”을 “해당”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제1호 중 “각 호”를 “제1호”로, “자(상
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를 “자가”로 한다.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필요시 조치
- 기타사항: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본문 중 “해동”을 “해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호 중 “각 호”를 “제1호”로, “자(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를 “자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 ----- ----- -----.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 ----- ----- -----.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일 것	1. ----- ----- ----- ----- ----- 다음 각 목의 밀집 기준을 충족한 ----- ----- -----	1. ----- ----- ----- ----- ----- ----- -----
<신설>	가. 상업지역: 30개 이상	가.·나. (현행과 같음)
<신설>	나. 상업 외 지역: 25개 이상	
<신설>	다.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 주용도 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동 용도지역으로 적용. 다만,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 ----- ----- ----- 해 당 ----- -. ----- ----- ----- ----- ----- -----.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 리 기 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용도지역					
	규모	토지 면적: m ² , 건물 연면적: m ² , 영업장 면적: m ² , 점포 수: 개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업무구역			회원 수		
시설 현황	주요시설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편의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m ² ,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의
의
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을 “다음 각 목의 밀집기준을 충족한”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상업지역: 30개 이상

나. 상업 외 지역: 25개 이상

다.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 주용도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으로 적용. 다만,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중전의 제1호) 중 “개발”을 “개발, 상인역량강화사업”으로 한다.

1. 경영현대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

별지 제1호서식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로 하고, 같은 서식 제1호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로, “자(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를 “자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일 것 <신 설> <신 설> <신 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 ----- ----- -----. 1. ----- ----- ----- ----- 단 음 각 목의 밀집기준을 충족 한 ----- -- 가. 상업지역: 30개 이상 나. 상업 외 지역: 25개 이상 다.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 이 혼재된 경우: 주용도지 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 당 용도지역으로 적용. 다 만,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업 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 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골목	제5조(지원사업) -----

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u><신 설></u> 1.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2. ~ 4. (생 략)	----- -----. 1. <u>경영현대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u> 2. ----- -- <u>개발, 상인역량강화사업</u>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 까지와 같음)
--	---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 리 기 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	명 칭				대 표 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용도지역							
	규모	토지 면적: m ² , 건물 연면적: m ² , 영업장 면적: m ² , 점포 수: 개						
상인 조직	명 칭				대 표 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업무구역				회 원 수			
시설 현황	주요시설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편의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m ² ,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의
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3. 25.(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2. 28. 이용진 의원 외 15인 발의 (의안번호 437호)

나. 회부일자 : 2025. 3. 13.

다. 상정일자 : 제3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5. 3. 19.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용진 의원)

가. 제안이유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의하면 공기질 유지기준을 시·도의 조례로 엄격하게 정할 수 있다고 하는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보다 엄격한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조성을 통해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개정함(안 제5조2항)

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신설함(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3. 06. ~ 2025. 3. 12.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정 취지

- 본 개정안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정비하고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마련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나. 조문 검토

(1)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기준 정비(안 제5조 후단 신설)

- 안 제5조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기존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만을 적용하던 것을 서울시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제7조를 추가하여, 두 규정 중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⁷⁾에서 “시·도의 조례로 공기질 유지기준을 더 엄격하게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미 현행 조례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서울시의 기준을 추가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관리되도록 한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7)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③시·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해당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3. 6. 12., 2020. 5. 26.>

현행	개정안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제3조와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제 7조 중 엄격한 규정---.

(2)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마련(안 제6조 신설)

- 안 제6조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제5조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⁸⁾ 및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에게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신 설>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8)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30., 2015. 12. 22., 2017. 12. 12.>

다. 종합 검토 결과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기준 강화 및 권고기준을 마련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조성으로 이를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7
----------	-----

발의연월일 : 2025년 2월 28일

발 의 자 : 강수진, 고영옥,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의하면 공기질 유지기준을 시·도의 조례로 엄격하게 정할 수 있다고 하는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보다 엄격한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조성을 통해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개정함(안 제5조2항)

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신설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부서협의 : 환경과

라. 입법예고 : 2025. 3. 6. ~ 2025. 3.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3조”를 “제3조와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제7조 중 엄격한 규정”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법 제6조의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제3조와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제7조 중 엄격한 규정---.
<신 설>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법 제6조의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u>제6조</u> ~ <u>제10조</u> (생략)	<u>수 있다.</u> <u>제7조</u> ~ <u>제11조</u> (현행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3. 25.(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2. 28. 양순임 의원 외 15인 발의 (의안번호 438호)

나. 회부일자 : 2025. 3. 13.

다. 상정일자 : 제3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5. 3. 19.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양순임 의원)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함.

나.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라. 한복입기 권장(안 제5조)

마. 한복의 날 지정(안 제6조)

바. 활성화 및 지원(안 제8조)

사. 한복착용자의 우대(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03. 06. ~ 2025. 03. 12.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제정 취지

- 본 제정안은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을 즐겨 입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나. 조문 검토

- 안 제1조(목적)와 제2조(정의)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한복”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개발·추진하고 그 활동을 권장·지원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 안 제5조(한복입기 권장)는 구청장이 관내 기관이나 단체, 민간기업 등에 한복 입기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6조(한복의 날 지정)와 제7조(고유의 명절 및 주요행사)는 구청장이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설날, 추석 등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의 주요 행사에 한복 입기 활성화 사항을 규정하여 한복 입기 문화를

국민들의 생활 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8조(활성화 및 지원)는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한복입기 활성화 시책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9조(한복입는 자의 우대)는 한복을 입은 사람이 성북구가 설치·운영·관리하는 공연·전시 또는 문화·유적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10조(표창)는 한복 입기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 결과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 입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일상생활 가운데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다만 한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전통문화로 계승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수립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8
------------	-----

발의연월일 : 2025년 2월 28일

발 의 자 : 강수진, 경수현, 권영애,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용진, 이호건, 임태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라. 한복입기 권장(안 제5조)

마. 한복의 날 지정(안 제6조)

바. 활성화 및 지원(안 제8조)

사. 한복입는 자의 우대(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나. 예산조치 :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필요시 조치

다. 부서협의 : 문화체육과

라. 입법예고 : 2025. 3. 6. ~ 2025. 3.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입은 전통복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추진하고, 그 활동을 권장·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한복입기 권장)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기관 및 단체·기업 등에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제6조(한복의 날 지정) 구청장은 한복입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고유명절 및 주요행사) 구청장은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 등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의 주요행사에 성북구민이 한복을 더 많이 입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활성화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한복입기 활성화 시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한복입는 자의 우대) ① 구청장은 한복을 입은 사람이 고유명절 · 국경일 및 구 한복의 날 지정일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 구가 설치 · 운영하는 공연 · 전시 또는 문화 · 유적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범위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한복입기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을 대상으로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3. 25.(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2. 28. 경수현 의원 외 13인 발의 (의안번호 439호)
- 나. 회부일자 : 2025. 3. 13.
- 다. 상정일자 : 제3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5. 3. 19.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경수현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징물은 도시의 정체성을 함축적으로 의미하여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우리구 상징물 관련 규정은 예규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일관된 상징물 관리에 한계가 있어,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우리구 상징물의 위상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상징물의 종류, 제정 · 변경 또는 폐지(안 제3조~제4조)
- 다. 상징물의 관리 등, 관련 사업 등(안 제5조~제6조)

라. 상징물의 사용승인, 사용료 등, 위반 시 조치사항(안 제7조~제9조)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3. 06. ~ 2025. 3. 12.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제정 취지

- 본 제정안은 성북구의 상징물이 1994년 5월 30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것을 조례로 규정하여 상징물의 위상 제고와 대표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문 검토

- 안 제1조(목적)와 제2조(정의)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상징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상징물의 종류)는 상징물의 종류를 정하고 별표를 통해 휘장, 자연상징물, 구기, 구색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여 우리 구의 정체성을 구체화함.
- 안 제4조(상징물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는 상징물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시 구청장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 이는 상징물의 잦은 변경 등은 성북구 이미지에 대한 혼란을 주고, 시설물에 부착된 상징물의 교체 등으로 인한

예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불필요한 변경 등을 예방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는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상징물로서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상징물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성북구청 시각표시물 표준화 지침 등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였음.
- 안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구의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을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와 제8조(사용료 등)는 상징물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상징물의 사용에 대한 승인 절차와 사용료 등에 대한 관리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 안 제9조(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안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 결과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그동안 성북구를 대표해온 상징물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규정」에 의거 운영돼 오던 업무의 근거를 조례로 격상하여 법제화함으로써 구 상징물의 위상 및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안

(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9
----------	-----

발의연월일 : 2025년 2월 28일

발의자 : 강수진, 경수현, 권영애, 김육영,
소형준, 양순임, 이용진,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상징물은 도시의 정체성을 함축적으로 의미하여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우리구 상징물 관련 규정은 예규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일관된 상징물 관리에 한계가 있어,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우리구 상징물의 위상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상징물의 종류, 제정·변경 또는 폐지(안 제3조~제4조)

다. 상징물의 관리 등, 관련 사업 등(안 제5조~제6조)

라. 상징물의 사용승인, 사용료 등, 위반 시 조치사항(안 제7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표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홍보전산과

라. 입법예고 : 2025. 3. 6. ~ 2025. 3.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구가 지정한 휘장, 자연상징물, 구기, 구색, 캐릭터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장: 별표 1
2. 자연상징물: 별표 2
3. 구기: 별표 3
4. 구색: 별표 4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징물

제4조(상징물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상징물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시각표시물 표준화 지침 등 상징물별 안내서를 준수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③ 상징물을 제2항의 안내서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

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③ 사용승인 또는 사용 변경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이나 사용 조건에 위배 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와 납부시기 및 납부 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징물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9조(위반 시 조치 사항)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한 자에게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